

한국전자거래(CALS/EC)학회 '99 종합학술대회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 연구

1999. 11. 19 - 1999. 11. 20

장소 : 창원대학교(산학교육협동관)

(사) 기술과 법 연구소

정진근 연구원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 연구

(목 차)

I. 전자거래의 개념과 현황

1. 序
2. 전자거래의 개념
3. 전자거래의 특징
4. 전자거래의 현황과 전망
5. 제도정비의 필요성

II.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 이슈

1. 전자거래와 민법의 변용
2. 전자거래와 조세관계
3.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4. 전자거래와 보안

III. 전자인증

1. 개요
2. 전자서명의 유효성
3. 전자인증기관 관련 국제적 동향
4. 전자서명법 관련 국제적 동향
5. 국내 전자서명법 내용 개관

IV. 전자거래의 결제제도

1. 전자결제수단의 유형
2. 전자자금이체
3.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지급
4. 전자화폐
5. 전자결제의 입법필요성

V. 기타 관련 문제

1. 지적 소유권상의 문제
2. 준거법, 재판관할권의 문제
3. 소비자 보호문제

VI. 전자상거래법 제도정비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2. EDI거래의 표준계약서

VII. 국내 전자거래 관련 입법 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VIII. 결론 -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I. 전자거래의 개념과 현황

1. 序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의미하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인 후기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¹⁾.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거래관계, 사회제도 등 모든 것들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거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전자문서의 효력등을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외에 민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 조세문제, 전자결제수단, 지적소유권,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문제, 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새로운 개념의 법·제도의 마련과 이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거래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의 내용과 국제적인 입법동향, 그리고 국내의 입법내용을 살펴봄과 함께 현행 법·제도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된 법·제도의 모습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1)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103쪽,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움

2.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4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은 당초에는 인터넷과 무관하게 정보기술을 통한 종이문서가 없는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로 기업간의 거래(business-to-business interaction)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즉 웹기술이 출현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확산되면서 전자거래는 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국가와 기업 혹은 개인의 거래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²⁾

따라서 Electronic Commerce를 번역하여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일본이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자거래'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거래가 대부분은 상거래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일 것이나 반드시 상거래에 한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거래나 순수한 민간거래에 있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UCC 제2편에서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계약성립의 일반적 단계로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전자 메시지로써 행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³⁾

3. 전자거래의 특징

1) 공급자 측면에서의 특징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공급자는 특정국가에 회사의 본점 혹은 지점을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해,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그 기반으로 하므로 준거법을 정하는데 있어 그 특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2~4쪽

3)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4쪽

정이 어렵다. 또한 무대면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그 기업의 신뢰성이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소비자 측면에서의 특징

역시 무대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행위능력 혹은 소비자의 진정성을 알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의 문제와 행위능력 등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거래의 방식에서의 특징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있으며, 거래대상에 있어서는 물품, 서비스, 지적산물 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거래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적소유권의 문제와 조세 및 관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래조건을 단순히 컴퓨터를 '클릭'함으로써 거래를 하게 되어 부합거래의 성격을 띠게 된다⁴⁾. 따라서 거래조건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4) 정보인식의 시간성에서 오는 특징

종래의 의사표시가 도달주의 혹은 발신주의 등에 의해 구분되어 온데 비해 전자거래는 정보의 전달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 정보를 제대로 수령하였는지, 즉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4. 전자거래의 현황과 전망⁵⁾

일본 우정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네트워크거래의 시장규모는 1995년

4)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4~5쪽

5)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1쪽

에는 523.2억엔, 1996년에는 3,489.6억엔이었고, 네트워크 거래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이용자는 1995년 말 5,600만명을 넘어섰고 1996년에는 7,000만명, 1999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된 호스트 컴퓨터의 설치대수는 1997년 1월 현재 약 70만대를 넘었으며,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 3월 현재 1,70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가상상점 수는 1997년 4월 현재 3,180개로 추정된다.

이같은 현상은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1997년 7월 독일에서 개최된 40개국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본 선언」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서 인터넷 전자거래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시장논리가 발전의 핵심임을 역설하였고, 각국에서 인터넷 거래의 무관세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발전 속도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5. 제도정비의 필요성

이와 같이 전자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20여 개 법률에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및 도달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⁶⁾.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도, 법과 제도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각 법령들의 부조화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거래에 맞는 개별법의 정비가 강력하

6)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과제, 48쪽,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움, 1997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 두 법만으로는 다양한 전자거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⁷⁾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II.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 이슈

1. 전자거래와 민법의 변용⁸⁾

1) 계약주체의 고찰

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의 취약점은 역시 무권대리와 미성년자거래의 문제이다. 이것은 전자거래가 비대면의 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전자거래의 경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를 한 자가 누구인지 판명하기도 어렵거니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등은 일반적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첫째 무권대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민법은 무권대리의 경우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에 의하여 진정인의 명의를 타인에 의해 도용되어 지더라도 명의도용인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킹에 의한 거래 등 본인의 대리권 수여의사와 명의도용인의 도용의사가 전혀 없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는지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7) “특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과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무원들의 몰이해와 관련 법규 정비 미비로 “단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 법”(아이네트 허진호 사장), “실제 사업할 때 개선된 건 거의 없다”(메타랜드 이모씨)는 반응으로 관련 업계의 체감도는 낮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9. 9. 6일자 황금산업 전자상거래 국내선 정책 소외지대 참조

8) 정종휴, 전자상거래와 계약이론의 변용, 11쪽~48쪽,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즉, 전자상거래에서는 ID번호와 패스워드의 관리 등, 전자데이터 명의인의 진정성의 문제에 관하여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행위무능력자의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였는지 알 수가 없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범위를 정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형식의 문제, 행위무능력자의 사술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행위가 사술에 해당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고찰

전자거래에서는 의사표시가 단순히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입력의 오류나 버튼을 잘못 클릭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민법의 표시상의 착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의 입력 잘못을 막거나 잘못의 정정을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확인절차와 확인을 위한 구조를 마련해 두지 않은 한 표의자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전자데이터의 전송시의 에러, 부도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3) 계약의 성립의 고찰

의사표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클릭으로 전송을 시작했을 때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디지털 정보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하였을 때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了知하였을 때 그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정보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과를 인정한다는 도달주의가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은 도달주의나 발신주의의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단순히 의사표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 9조 ①)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행해진 데이터의 송신은 수신확인의 도달시까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다룬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모델법 제14조),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②도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4) 청약의 유인단계의 고찰

전자거래가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품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인지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私見에 의하면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소비자가 구매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구매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구분하려는 견해에 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5)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의 고찰

전자거래에 의한 계약의 이행에는 “오프라인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형의 계약의 이행은 종래의 계약의 이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적으나, “온라인형” 계약의 이행이 문제이다.

온라인형 계약의 이행의 경우 계약의 이행시기도 역시 송·수신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려면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므로 데이터 송신의 도중에 통신시스템의 문제와 제3자

의 행위에 의한 하자(예: 해킹 또는 원인 모를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극적 채권침해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등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과 데이터 에러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거래와 조세 관계⁹⁾

1) 전자거래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

전자거래는 인터넷에 기반을 둬으로써 전통적인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여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가상시장(Cyber Market)내지 지구촌 시장(Global market)을 창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 인터넷상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정부권한의 회색지대(Grey Zone)”가 바로 조세 분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거래에 따른 조세환경의 문제점

첫째,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원확인 및 결정이 곤란하여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그 수나 내용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와 원격조정 및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9) 장성은, 전자상거래와 국제조세, 49쪽~74쪽,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소득의 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다. 실령 웹 사이트(Web site)나 인터넷 주소(Internet address)의 소유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된다.

셋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획득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획득권은 해당 과세당국의 과세관할권내에서는 그 행사가 용이하지만, 그 관할권을 벗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조세피난처(Tax haven)등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정보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넷째, 탈매개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s)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협력을 하는 여러 중개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인데,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러한 중개기관의 필요성이 제거되면서 과세행정은 어렵게 된다.

다섯째, 조세회피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의 조세피난처에는 익명의 계좌를 국제전신환 서비스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급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과세당국이 이러한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국제적 동향

OECD는 전자상거래를 앞당길 수 있는 국제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A Global Market Place for Consumer 회의, 1997년 11월의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회의, 1998년 10월 Ottawa에서의 제 3차 회의 등 전자상거래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그외에도 APEC, WTO, WIPO, UNCITRAL 등 국제기구나 제외국에서도 조세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적 연구동향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는 국제적 협력을 요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세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세제를 적절히 변용하면 된다.

셋째,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 사이의 조세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특유한 새로운 세목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

3. 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¹⁰⁾

1) 개요

전자거래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사기·기만 거래의 방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검토를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즉 19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 「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에서는 다음의 아홉 가지가 과제로서 제기되었는데, 역세스의 확보와 규제, 인증,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기와 부실 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이 그것이다.

10)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103쪽~127쪽,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그 후 CCP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제 중 사기·오인적 거래행위, 분쟁처리·구제메카니즘, 온라인·프라이버시의 3가지에 관하여 소비자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OECD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법이나 약관규제법 등 기존의 법에 의해 이를 규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도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단 4개조에서 시책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자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전자거래가 거래의 도구로서 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거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과 약관규제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기 어려운 점¹¹⁾이 있을 것이므로 전자서명법과 같이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자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 협력과 국제 공통규범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전자거래와 보안

전자거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 컴퓨터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

11) 특히,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 예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는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네트워크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입증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사업자에게 적절히 분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여진다.

고, 이러한 컴퓨터네트워크는 제3자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며,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 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인해 정보의 보안 및 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홈뱅킹의 침해사례는 물론이고, 시스템 장애시의 전송오류의 문제 또는 해킹에 의한 전송오류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거래의 안전성이 침해당하는 때에도 컴퓨터해킹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발생의 위협은 물론 사후 구제수단에 대한 불신감까지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에 있어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민·형사법상의 법리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는 실제의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보안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통일적이고, 현실에 맞는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III. 전자인증

1. 개요

기존의 서명이 개인의 수기서명을 이용하는데 반해, 전자거래의 경우 펜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광의의 전자서명 방법 중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Password)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이다.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신원확인 및 무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기술 중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받는 방법으로 수기 서명의 기능을 대체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¹²⁾.

12)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쪽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자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키와 그 키를 소유한 사람이 일치하여야 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제 3자로 하여금 전자서명키와 그 키를 소유하는 사람의 신원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인증”이라 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인증기관(CA:Certification Authority)”이라고 하며,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원정보와 전자서명검증키가 포함된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증기관은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금력과 신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과 정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2. 전자서명의 유효성

전자서명의 유효성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제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동법 제6조는 電子署名의 효력에 관하여 제1항에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이 認證한 電子署名은 다른 法律에 그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法律이 정하는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고 하여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署名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고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자인증기관 관련 국제적 동향¹³⁾

1) 미국

미국의 경우 상무부 산하 국가표준업무 담당기관인 국립표준원(NIST:

13)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쪽~12쪽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은 정부기관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연방공개키기반구조(FPKI)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서명키에 대한 관리 및 인증서 분배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인증서 취소목록 지원,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 생성 및 열람, 확인 기능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인증기관으로는 Verisign과 GTE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NetDox, Surety Technologies 등이 최신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송신자 확인 뿐 아니라 전자메시지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2) 미국 유타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키기반의 전자서명법을 제정한 미국의 유타주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1998년 6월 현재 유타주내 3개의 기업을 인증기관으로 승인한 상태이다.

3) 일본

일본의 인증실용화실험협의회(ICAT)는 일본 내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으로서 하위 인증기관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20개의 하위 인증기관을 시험관리중이다.

4) 인증기관의 형태

제외국의 사례와 인증기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증기관은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가주도형은 인증업무가 신뢰성과 소비자의 보호라는 명목아래, 국가의 공식인증기관 혹은 인증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최상위 인증기관을 설치하여 인증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형태인데 반해 민간주도형 인증기관은 전자거래가 민간의 자율적인 거래관계이니만큼 그 인증도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주도형 인증 체계의 단점으로는 공식인증기관외에 민간의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하는 점과 민간의

인증기관을 어떠한 형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냐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하여 국가의 최상위 인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는데 반해, 민간의 인증기관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민간주도형 인증 체계의 경우 인증기관이 난립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선택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자나 소비자가 모두 비대면 거래에 의해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자거래의 장애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불안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자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인증기관을 설치하거나, 민간 인증기관 중 신뢰성 있는 기관을 공식 인증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국가주도형 인증체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전자서명법 관련 국제적 동향¹⁴⁾

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1996년 6월 14일에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으며, 동 모델법 제7조에서 데이터메시지와 관련된 서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7년 12월 12일에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을 발표하였다.

통일규칙이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자서명은 공개키암호방식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을 안전한 전자서명의 하나로 간주하며, 안전한 전자서명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

14)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쪽~16쪽

고 있다. 이외에도 인증서, 인증기관과 인증서 소유자 및 인증서 신뢰자간의 관계, 인증서의 취소와 효력정지, 인증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외국 인증서의 상호인증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인증기관의 인허가제도 및 인허가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2) 유럽의회와 이사회(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1997년 4월 16일의 “본(Bonn) 선언”에서 전자상거래의 핵심이슈로서 디지털서명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1998년 5월 13일에 “전자서명을 위한 공통 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UNCITRAL 통일규칙 초안처럼 전자서명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사전 선정(Prior authorization)보다는 자발적인가(voluntary accreditation)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증서 및 인증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여 이에 합당할 경우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3) 미국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유타주 디지털서명법(Utah Digital Signature Act)은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근거한 디지털서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대표적인 법률이며, 미국의 많은 주와 독일, 말레이시아 전자서명법의 모델로 작용하였다.

이 법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 허가방식을 채택하면서 허가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분명한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등의 잇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 상무부 내 “기업 및 상무국(Division of Corporations and Commercial)”이 인증기관의 인허가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은 디지털서명 및 인증기관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매

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인증기관의 허가요건과 조사감독관련 내용, 인증기관과 신청인의 의무, 인증서의 발행, 정지 및 취소, 디지털서명의 효력 등이 명기되어 있다.

5. 국내 전자서명법 내용 개관

국내 입법설명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IV. 전자거래의 결제제도¹⁵⁾¹⁶⁾

1. 전자결제수단의 유형

현재까지 가장 인기있는 결제수단은 역시 현금결제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의 서면을 통한 자금의 지급결제 내지 자금이체제도는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컴퓨터통신망을 바탕으로 타지간의 자금이체, 한은금융망(BOK-Wire)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총액결제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자금이체(전자자금이체)로 대체되었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보급과 확산으로 거래가 무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무대면의 거래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 내지 자금이체제도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거래상의 결제제도는 인터넷이란 개방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밀성이나 무결성 또는 진정성 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인터넷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였고, 또한 소비자나 기업도 인터넷의 상업화와 웹(World Wide Web; WWW)의 인기상승에 편승하여 개방된 인터넷에서 전통적인 결제수단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15) 허동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16) 심준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기존 상거래에서의 결제수단은 현금지급, 은행을 통한 지급(수표나 지로에 의한 지급), 자금관리서비스(CMS)에 의한 이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이체, 지급카드(신용카드, 데이빗카드)에 의한 지급 등 다양하다. 반면에 전자거래에서는 그 거래가 전자적인 데이터의 송수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수단과는 다른 새로운 전자적 결제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결제수단의 유형으로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무정보를 송수신하여 결제하는 방법, 전자적인 자금이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 전자화폐나 전자수표를 이용하는 방법, 현금을 지불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하나, 전자거래의 출현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는 전자자금이체와 전자화폐가 있으며,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지급의 방법도 많은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지급, 전자화폐에 대해 살펴본 후 전자결제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논하기로 한다.

2. 전자자금이체

1) 개념

전자자금이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에 따라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자금이체방법을 말하지만, 그 명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자금이체의 전자적 방식의 범위에 따라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광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전자자금이체를 “자금이체의 절차 중 일부라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다면 전자자금이체로 보고” 있으며, 이는 UNCITRAL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적지침(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에서 “종전의 서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던 자금 이동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의 단계가 전자공학적 구조, 즉 전자적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협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라고 파악함으로써 자금이체의 개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자금이체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에서 “전자자금이체란 수표, 환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증권에 의한 거래 이외의 자금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단말기, 전화기기, 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기관에 구좌의 차기나 대기를 지시하거나 수권하여 자금이체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질충적인 견해로는 자금이체의 모든 단계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만을 전자자금이체로 보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전자적 수단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켜 규율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전자자금이체의 유형

전자자금이체의 주체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면 전자자금이체거래와 전자자금결제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거래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고객과 은행사이의 자금거래로서 비교적 소량의 자금거래에 해당된다. 즉, 전자자금이체·대체 및 단말기에 의한 자금이동거래로서 그 방식은 대체로 현금인출기·ATM, EFT/POS 등의 시스템, 전화기, 단말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단말기에 의한 거래는 다시 홈뱅킹(Home Banking), 펴뱅킹(Firm Banking), 버추얼뱅킹(Virtual Banking)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자금결제거래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적 자금거래로서 전자자금이체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며, 전자자금결제의 방식으로는 미국의 경우 ACH, Fed Wire, Bank Wire, CHIPS 등에 의한 것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日銀네트워크, 全銀시스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199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BOK-Wire 시스템 등이 있다.

3) 전자결제의 수단

현재 전자결제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자결제의 수단으로 온

라인상의 신용카드에 기초한 지급수단과 증표에 기초한 지급수단(전자수표와 전자화폐)이 고안되고 있으며, 또 네트워크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은행도 출현하고 있다.

3.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지급

1) 개념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지급이란 기존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주문 또는 취득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번호의 입력 등을 통해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현재 전자결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신용카드번호의 도용 등 불안감이 현존하고 있어 전자거래의 보급과 확산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지급의 법적 문제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지급의 법적 문제점으로는 무대면의 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관계로서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적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행위무능력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및 제도적 장애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반적 법률관계로는 온라인망을 이용한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지급의 경우에 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적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행위무능력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계약법상의 문제로서 현행 사법의 체계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용카드지급에 관련된 법규의 수정이나 특칙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즉, 무권대리, 위조, 변조 등의 무권한자에 의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은행측의 면책약관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셋째, 전자지급제도의 전형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보통 발신인, 수신인과 통신사업자(네트워크)의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된다. 이중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즉, 소위 '네트워크책임론'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문제는 통신서비스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라는 점과 통신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담이 지나칠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4. 전자화폐

1) 전자화폐의 의미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란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플라스틱 카드에 내장된 IC칩 또는 개인 컴퓨터에 일정한 화폐가치를 저장한 다음,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소유자의 발행자에 대한 일반적 구매력을 가지는 전자적 채권정보 또는 발행자가 지급보증한 전자적 가치정보로서 일상적 사용에 있어서 현금과 유사하나 전자지갑에 저장된 가치는 통화당국이 발행한 법정화폐는 아니다.

2) 전자화폐의 유형

전자화폐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치저장장치의 방식에 따라 전자지갑과 디지털화폐(네트워크형)로, 은행 등의 발행기간의 단말기와 직접 연결되어 자금이동시 즉시 처리되는냐의 여부에 따라 온라인형과 오프라인형으로, 거래기록이 관리되는냐의 여부에 따라 계좌형과 비계좌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전자화폐의 특성

전자화폐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화폐가치, 범용성 내지 교환성, 안전성, 편리성, 익명성, 암호화와 표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의 경우에는 전자화폐가 국제범죄조직 등에 의해 돈세탁이나 다른 범죄증거의 은닉에 사용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전자화폐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나아가 국가안전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

4)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발행기관의 전자화폐 전용예금계좌에 대한 추심청구권을 화체한 것인가의 여부, 전자화폐내의 이용가능한 자금이 유산상속 또는 압류의 대상인가의 여부 등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전자결제에의 입법필요성

이상과 같이 전자거래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의 온라인 거래에서의 이용은 물론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하면서도 전자거래에 맞는 새로운 지급의 유형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에 대한 정책과 과세문제, 거래의 보호문제 등은 단지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적인 전자결제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결제 제도의 법률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요청되는 사항들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기타 관련 문제

1. 지적소유권상의 문제

전자거래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른바 '가상세계(Cyber Space)'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상점이나 거래의 표현은 거의 인터넷 웹(World Wide Web; WWW)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상점은 실제의 상점과 비교할 때, 상법상의 상인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 그림이나 글 등에 대한 저작권과 의장권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상점 수는 가히 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막대한 개발비와 개발비용을 들이는 대신 타인의 웹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HTML로 대표되는 웹상의 언어구조는 이러한 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국가간의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에 상관없이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손쉽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의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웹사이트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간의 상호 권리인정에 대한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준거법,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조세문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상인은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곳과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마존'과 같은 세계 최대의 서적판매회사의 경우도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의 역할은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Computer Server)에서 하고 있다. 또한 영세한 많은 업체들은 사무실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컴퓨터 서버의 위치는 수시로 이동가능하다.

이렇듯 무대면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기 힘든 전자거래에서는 그 분쟁의 해결에 있어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실제의 역할을 하는 서버를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 본점 등의 기존의 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⁷⁾.

3. 소비자 보호문제

소비자보호는 거래의 활성화를 낳게 하고, 거래의 활성화는 다시 상인의 시장에의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의 활성화는 다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이익이 크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안의 마련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존 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전자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발생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책임에 대한 추정규정 그리고 분쟁처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17) 이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아직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1999. 9. 6일자 "사이버 불황 배경"이라는 기사를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진입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이버 쇼핑몰 업체 '인터넷파크'는 지난해 사무실을 옮기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검찰조사를 받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설립, 이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회사 최상국씨는 "사이버 쇼핑몰은 전세계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시장인데 국내업체에만 신고의무를 지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다."

VI. 전자상거래법제도 정비의 국제적 동향¹⁸⁾

1.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1) 모델법의 구조

동 모델법은 2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전자상거래 일반」, 제2부는 「특정영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물품운송」이라는 제목 하에 2개조의 제1장만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상정하여 기초되었지만,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전자산하증권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대한 UNCITRAL의 의도는 모델법 전체의 체제를 고려하여, 개별영역에 관한 「제2부」를 두고,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1장으로 하여 앞으로 다른 영역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모델법의 특징

첫째로 모델법은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국내 입법화되어야 하는 표준법으로서 이른바 소프트법(Soft law)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시키고 있지 않고, 각국은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전자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법적 장애를 최대한 줄이면서 각국의 입법활동에 간섭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셋째로 본 모델법은 상사거래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에서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국내 입법이 전자거래를 선택한 이유를 밝힌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18) 송경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외국의 입법동향, 34쪽~39쪽,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 1997

또한 소비자거래에 관하여는 본 모델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본 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하한 법규범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소비자거래를 일률적으로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피하였다.

2. EDI거래의 표준 계약서

제외국에 있어서는 EDI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의 「전기통신거래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행위준칙」, 영국 EDI협회에 의한 「전자데이터교환에 관한 표준협정」, 미국법조협회의 「전자데이터교환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의 모델 협정」, 프랑스의 컴퓨터 및 전기통신법 연구 국제센터의 「EDI교환계약서식」, 캐나다 피백 통신성의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 계약」, 뉴질랜드 전자데이터교환협회의 「EDI표준협정」, 오스트리아 EDI 평의회 「전자데이터교환에 관한 모델협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데이터의 안전성, 메시지의 확인(Verification), 메시지의 완전성(Integrity), 메시지의 수령확인(Confirmation), 데이터의 보존(Storage), 불가항력(Force majeure) 면책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Ⅶ. 국내 전자거래 관련 입법 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

1) 개요

전자거래는 크게 i)사업자(Merchant)와 ii)소비자, iii)인증기관, iv)지불기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에 암호기술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진다.

물론 전자거래도 상거래 혹은 민사거래에 포함되어지므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 등 민사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의 요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 시행한데 이어, 정보통신부에서 전자서명법을 시행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보호, 조세문제 등 산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입법의 줄기는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자거래의 기본법인 전자거래기본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전자거래관련 타법과의 관계¹⁹⁾

현재 국내의 전자거래 관련 법제는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에 전자문서교환 및 전자거래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법원사무관리규칙,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과 조세, 출입국관리, 지적관리, 주민등록, 차량 및 운전면허관리, 해운 및 항만 업무관리, 상업등기 관리를 위한 개별적 조문이 각각의 법규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적으로 산재됨으로 인해 그 통일성이 부족함은 물론 그 내용도 전자문서자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행정 업무의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민사법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의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으로 전자문서, 그 효력 및 발생시기 또는 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통일된 개념과 질서를 가지고 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서명법 혹은 전자자금이체법 등은 모두 전자거래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거래의 일정부분들을 규율하는 입법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19)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16쪽~18쪽

3)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조

총 제6장, 제34조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개념의 정의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각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전자문서 : 전자문서의 효력과 증거능력 및 송수신시기 및 장소,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 : 개인의 정보보호와 컴퓨터의 안전성,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의무, 공인인증기관의 설치근거, 암호기술의 사용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무로서 시책의 수립·시행, 전자거래정책협의회·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의 설립근거와 기술개발 및 지원 그리고 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제5장 소비자의 보호 :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구제제도 마련의 의무와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제6장 보칙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범위와 거래의 범위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적인 성격과 행정규제적인 성격이 혼재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대상인 거래의 범위에 관하여도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상사거래는 물론 공적 거래, 민사거래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거래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전자거래 관련 법규가 내용 및 접근방식에서 공공분야 위주이거나 지나치게 정부시각의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혁적으로 민간 분야의 거래의 신속과 능률의 도모에서 비롯된 전

자거래의 특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적용대상을 넓은 의미의 전자거래로 보아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및 양분야간의 규제와 피규제의 관계보다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권리관계 확정이라는 민사법적 접근방식에 따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UCC 제2B편의 규정에도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를 사용하고 있고, 정보통신사회에서 국가는 기존의 국가와 달리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범위가 타당하다고 본다.

5) 소 결

전자거래기본법이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거래행위에 사용될 전자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정립과 통신망상의 데이터의 안전성, 거래안전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및 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법률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거래의 확대에 따라 전자거래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민사법, 형사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혹은 민간주도의 협의체 구성이나 공인인증의 문제 등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논의해야 할 대상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인들의 전자거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전자거래를 하나의 상거래로서 확립해나가기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함에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전한 비판은 더욱 탄탄한 전자거래시대를 맞이하도록 해줄 것이다.

2. 전자서명법

1) 전자서명법의 개요

전자거래가 디지털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하는 거래이니만큼 거래의 당사자의 진정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과 인증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주도형 인증기관의 설립, 인가 등의 방법으로 인증체계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서명법에서 인증기관과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인증기관이 민간의 자율적인 인증기관의 설립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 관계와 조화가 문제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자서명법의 구조를 살펴보고 간략하게 공인인증기관과 민간 인증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기로 한다.

2) 전자서명법의 구조

전자서명법은 총 제6장 3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전자서명법의 내용과 용어를 정의하고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과 업무준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인증서 :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련하여 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5장 보칙 : 외국과의 인증업무의 상호인정과 정부의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6장 벌칙 : 전자서명생성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나 인증업무의 위반에 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공인인증기관과 민간의 인증기관의 관계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는 그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경우인 공인인증기관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인증기관을 병존케 하여, 인증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보호를 국가 등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부분과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영역에 맡기는 부분의 2원적 체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인 인증기관은 그 설립에서부터 업무집행, 휴·폐지 등에서 있어서 허가기관의 감독 등을 받지만 그에 상응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진정성 추정과 국제간의 상호 인증에 있어 정부의 보증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원적인 체제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 등에서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이면 사용자들이 민간의 인증기관보다는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뢰성있는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내의 전자서명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에 관하여 초안에 삽입되어있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대기업집단이 인증업무를 맡을 경우 각종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Ⅶ. 결론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이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에서 필요했던 청약과 승낙,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 국가간이 장벽, 시간적 제약, 재화나 용역의 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나날이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國富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나 사업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민법, 조세법, 소비자 보호관련 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혹은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함은 물론 법간의 조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 등 제법규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간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등 상사법 관련 법규들 위에서 전자거래상인, 인증, 지불체계, 암호체계, 소비자 보호, 조세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개별법들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소비자 보호는 소비의 활성화를 낳고 결국은 전자거래를 촉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개별법의 입법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전자거래관련 기본법안의 마련은 국내입법이 세계 초유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이나 전자자금이체법,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소비자 관련법규 등을 만들 기반을 닦아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을 마련할 때 전자거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2.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외국의 입법동향, 손경한, 제3회 KITAL 정기 국제 심포지엄
4.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서명 그리고 인증기관, Phillip Bently,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
5.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Tsuneo Matsumoto, 제3회 KITAL 정기 국제 심포지엄
6. 허동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7. 심준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 전자상거래와 계약이론의 변용, 정종휴,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9. 전자상거래와 국제조세, 강성은,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10.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소재선,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1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송오식, 1998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12. EDI/EC구축 및 Internet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용, 한국정보통신진흥회, 1996년 한국EC협의회
13. 전자신문, 1999년 4월 7일자, 1999년 4월 12일자
14. 중앙일보, 1999년 9월 6일자

電 子 去 來 基 本 法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去來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여 그 安全性과 信賴性의 확보 및 去來의 公正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電子去來를 촉진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電子的 形態로 작성되어, 送·受信 또는 貯藏되는 情報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電子文書を 작성하여 傳送하는 者를 말한다.
3. "受信者"라 함은 작성자가 電子文書を 傳送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電子去來"라 함은 財貨나 用役의 去來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電子文書에 의하여 처리되는 去來를 말한다.
5.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を 작성한 작성자의 身元과 당해 電子文書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電子的 形態의 署名을 말한다.
6. "사이버물"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情報通信設備를 이용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7. "認證機關"이라 함은 申請에 따라 電子署名 사용자의 身元確認 기타 관련 業務를 취급하는 者를 말한다.
8.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認證機關을 말한다.

第3條(적용범위) 이 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4條(電子去來當事者の 약정에 의한 변경)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受信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第 2 章 電 子 文 書

第5條(電子文書の 효력) 電子文書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효력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第6條(電子署名의 효력) ①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이 認證한 電子署名은 다른 法律에 그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法律이 정하는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署名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7條(電子文書의 證據能力) 電子文書는 裁判 기타의 法的 節次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第8條(電子文書의 保管) ①電子文書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그 電子文書의 保管으로 關係 法令이 정하는 文書의 保管에 相當할 수 있다.

1. 電子文書의 내용을 閱覽할 수 있을 것
2. 電子文書가 작성 및 送·受信된 時의 形態 또는 그와 같이 再現될 수 있는 形態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電子文書의 작성자, 受信者 및 送·受信日時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電子文書의 送信 또는 受信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電子文書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第9條(送·受信時期 및 場所) ①電子文書는 작성자외의 者 또는 작성자의 代理人외의 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時에 送信된 것으로 본다.

②電子文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時에 受信된 것으로 본다.

1. 受信者가 電子文書を 受信할 컴퓨터등을 指定한 경우에는 指定한 컴퓨터등에 入力된 時. 다만, 指定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入力된 경우에는 受信者가 이를 出力한 時를 말한다.

2. 受信者가 電子文書を 受信할 컴퓨터등을 指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時

③電子文書는 각각 작성자와 受信者の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되, 營業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電子去來와 가장 관련이 많은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고, 해당 電子去來와 관련이 있는 營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主된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受信者가 營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主된 居住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第10條(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代理人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自動으로 電子文書を 送·受信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電子的 手段에 의하여 送信된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受信者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電子文書가 送信되었음을 당해

電子文書の受信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受信者が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電子文書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送信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第11條(受信한 電子文書の 獨立性) 受信한 電子文書는 각 文書마다 獨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受信者が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電子文書가 반복되어 送信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受信確認) ①작성자가 受信者에게 送信한 電子文書에 대하여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受信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電子文書を 送信한 경우에는 受信確認通知가 작성자에게 到達하기 전까지는 그 電子文書는 送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當事者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受信確認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電子文書の 送信을 撤回할 수 있다.

第 3 章 電子去來의 安全

第13條(個人情報保護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電子去來當事者등"이라 한다)는 그 電子去來 또는 役務提供과 관련하여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을 本人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의 當事者

2. 認證機關

3. 情報通信設備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役務를 제공하는 者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의하여 蒐集된 情報를 本人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蒐集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財貨 또는 役務의 配達을 의뢰하는 者에게 配達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電子去來當事者등은 처리, 傳送 또는 보관되는 情報에 대한 부당한 接近과 이용 또는 情報의 流出 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個人情報에 대하여 本人이 閱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情報에 대하여 證憑資料를 제시하여 그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4條(컴퓨터등의 安全性)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他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安全性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者를 受託者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託者의 過失로 인하여 障礙가 발생한 때에는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告知하고 신속하게 障礙를 제거하여야 한다.

第15條(사이버몰의 運營者) ①사이버몰의 運營者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이버몰에는 그 運營者의 商號(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을 포함한다)·住所·電話番號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第16條(公認認證機關)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고 건전한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電子署名法 第4條의 規定에 따라 公認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公認認證機關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 기타 去來와 관련된 重要事項을 확인하기 위한 認證書를 발급한다.

第17條(公認認證機關의 관리) 政府는 電子去來를 이용하는 者를 보호하고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8條(暗號製品의 사용 등)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暗號製品을 사용할 수 있다.

②政府는 國家安全保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暗號製品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暗號化된 情報의 原文 또는 暗號技術에의 接近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章 電子去來의 촉진

第19條(電子去來促進을 위한 施策의 수립)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民間主導에 의한 추진, 政府規制의 최소화, 電子去來의 信賴性 확보, 電子去來分野의 國際協力強化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20條(電子去來促進計劃의 수립·施行)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計劃(이하 "電子去來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促進施策의 基本方向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規範에 관한 사항

3. 電子決濟制度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紛爭調停 등 電子去來當事者등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6. 電子署名, 認證, 暗號化 등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的 확보에 관한 사항
7.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8.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造成 및 需要創出에 관한 사항
9.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0.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超高速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에 관한 사항
12.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소관別 部門計劃을 수립하고 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이 電子去來促進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서 이를 확정한다.

第21條(電子去來政策協議會) ①電子去來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電子去來促進計劃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促進計劃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政策이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사업의 조정
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
는 사항

③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韓國電子去來振興院) ①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電子去來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며,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振興院은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 調查研究 및 出版·弘報·振興事業

2. 制度의 研究 및 環境造成事業
 3. 標準의 研究開發 및 普及事業
 4. 技術開發 지원사업
 5. 國際標準化會議의 참여 및 國際交流·協力事業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의 事務處理
 7.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이 委託하는 사업
-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振興院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에 充당하게 하기 위하여 振興院에 出捐할 수 있다.
- ⑤振興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院이 開發한 標準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⑥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3條(電子去來의 標準化)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고 關聯技術의 互換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의 制定·改正·廢止 및 普及
2. 電子去來와 關連된 國內外 標準의 調査·研究·開發
3. 기타 電子去來의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③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連된 研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24條(技術開發의 추진)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技術의 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關係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研究開發,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開發과 關連하여 필요한 사항

第25條(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の 촉진) 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關連 技術·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研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電子商去來支援센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去來와 관련한 教育訓練, 技術指導, 情報提供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機關을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政府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電子去來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指定取消의 기준, 經費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電子去來關聯 法人·團體에 대한 지원)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목적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가 電子去來促進計劃에 의하여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는 경우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8條(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 政府는 電子去來로 인한 被害를 救濟하고 公正한 電子去來의 慣行을 定着시키기 위하여 紛爭調停機構의 設置·운영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 5 章 消費者의 보호

第29條(消費者 保護義務) 政府는 消費者保護法 등 관계 法令의 規定에 따라 電子去來와 관련되는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30條(消費者에의 情報提供 등) ①政府는 消費者의 이해와 관련되는 電子去來에 관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 등을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消費者保護團體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提供要求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第31條(消費者 被害의 救濟) ①政府는 電子去來와 관련된 消費者의 불만 및 被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消費者保護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電子去來에 이를 적용한다.

第32條(被害補償機構의 設置) 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電子去來와 관련하여 消費者가 제기하는 正當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는 적절한 機構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第 6 章 補 則

第33條(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34條(相互主義) 外國人 및 外國法人은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이하 "標準院"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標準院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第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情報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制定한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制定한 것으로 본다.

第4條(電子商去來支援센터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商去來支援센터로 지정받은 機關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産業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第7條第6項 및 第7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電子署名法案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에 의하여 電子的인 형태로 작성, 送·受信 또는 貯藏된 情報를 말한다.
2.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を 작성한 者의 身元과 電子文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非對稱 暗號化方式을 이용하여 電子署名生成 키로 生成한 情報로서 당해 電子文書에 固有한 것을 말한다.
3. "電子署名生成키"라 함은 電子署名을 生成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電子的 情報를 말한다.
4. "電子署名檢證키"라 함은 電子署名을 檢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電子的 情報를 말한다.
5. "電子署名키"라 함은 電子署名生成키와 이에 合致하는 電子署名檢證키 를 말한다.
6. "認證"이라 함은 電子署名檢證키가 自然人 또는 法人이 所有하는 電子 署名生成키에 合致한다는 事實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認證書"라 함은 電子署名檢證키가 自然人 또는 法人이 所有하는 電子 署名生成키에 合致한다는 事實 등을 확인·증명하는 電子的 情報를 말한다.
8. "認證業務"라 함은 認證書의 발급 및 認證關聯 記錄의 관리 등 認證役 務을 제공하는 業務를 말한다.
9.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지정을 받아 認證役 務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10. "認證管理體系"라 함은 認證書의 발급 및 認證關聯 記錄의 관리 등 認證役 務을 제공하기 위한 體系를 말한다.
11. "加入者"라 함은 公認認證機關으로부터 그 자신의 電子署名檢證키를 認證받은 者를 말한다.
1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 되어 있는 姓名·住民登錄番號 등의 사항에 依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 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非對稱 暗號化方式"이란 情報를 暗號化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暗號化된 情報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暗號化方式을 말한다.

第3條(電子署名의 효력) ①公認認證機關이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한 認證書에 포함된 電子署名檢證키에 合致하는 電子署名生成키로 生成한 電子署名은 法令이 정한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電子署名이 당해 電子文書의 名義者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이고, 당해 電子文書가 電子署名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推定한다.

第 2 章 公認認證機關

第4條(公認認證機關의 지정)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를 安全하고 信賴性있게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에 한한다.

③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財政能力·施設 및 裝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公認認證機關의 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任員중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가.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나.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다.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라.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마.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法人의 取消당시의 任員이었던 者(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한한다)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

第6條(認證業務準則)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를 開始하기 전에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認證業務準則을 작성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認證業務의 종류
2. 認證業務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認證役務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認證業務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認證業務準則의 내용이 認證業務의 安全과 信賴性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加入者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公認認證機關에게 認證業務準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7條(認證役務의 제공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正當한 사유없이 認證役務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認證役務 利用者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公認認證機關의 業務遂行)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를 開始하기 전에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이하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 電子署名檢證키를 認證받아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電子署名檢證키에 合致하는 電子署名生成키를 이용하여 認證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9條(認證業務의 讓受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다른 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讓受하거나 다른 公認認證機關인 法人을 合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讓受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合併한 경우의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으로 설립된 法人은 종전의 公認認證機關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10條(認證業務의 休止·廢止 등) ①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休止期間을 정하여 休止하고자 하는 날의 3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通知하고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休止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②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廢止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通知하고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認證書와 認證書의 효력정지 및 廢止에 관한 記錄(이하 "加入者認證書등"이라 한다)을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保護센터에 대하여 당해 公認認證機關의 加入者認證書등을 引受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 및 加入者認證書등의 引繼· 引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是正命令) 情報通信部長官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公認認證機關의 業務遂行方法이 부적합하여 電子署名의 安全과信賴性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후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任員이 第5條第1號 各目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認證業務準則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加入者 또는 認證役務 利用者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6.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의 讓受나 公認認證機關合併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休止 또는 廢止의 통보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證業務廢止時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한 경우
8.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이 加入者 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
9.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書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書を 廢止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者の 個人情報 閱覽 또는 誤謬 訂正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第12條(認證業務의 정지 및 指定取消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認證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認證業務의 정지명령을 받은 者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認證業務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認證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6月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休止한 경우
4.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準則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正當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認證書등을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0條第4項의 規定은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繼·引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課徵金の 賦課)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停止가 加入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4條(檢査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의 安全과 信賴性 확보 및 加入者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認證機關에 대하여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認證機關의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認證管理體系·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 3 章 認證書

第15條(認證書의 발급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を 발급받고자 하는 者에게 認證書を 발급한다. 이 경우 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の 이용범위 및 用途 등을 고려하여 그 身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이 발급하는 認證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加入者의 이름
 2. 加入者의 電子署名檢證키
 3. 加入者와 公認認證機關이 이용하는 電子署名 方式
 4. 認證書의 一連番號
 5. 認證書의 有效期間
 6. 公認認證機關의 명칭
 7. 認證書의 이용범위 또는 用途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加入者가 第三者를 위한 代理權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③公認認證機關이 認證書を 발급하는 때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電子署名檢證키에 合致하는 電子署名生成키를 이용하여 당해 認證書에 電子署名하여야 한다.

④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を 발급받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認證書の 이용범위 또는 用途를 제한하는 認證書を 발급할 수 있다.

⑤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の 이용범위 및 用途, 이용된 技術의 安全과 信賴性 등을 고려하여 認證書の 有效期間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第16條(認證書의 효력) ①公認認證機關이 발급한 認證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消滅된다.

1. 認證書の 有效期間이 경과한 경우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の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가 廢止된 경우
5.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센터가 公認認證機關에게 발급한 認證書가 廢止된 경우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의 安全과 信賴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休止 또는 廢止하였거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가 정지된 公認認證機關이 발급한 認證書の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の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保護센터로 하여금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효력이 消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7條(認證書의 효력정지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그 代理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認證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認證書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認證書 효력회복의 申請은 認證書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8條(認證書의 廢止)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認證書를 廢止하여야 한다.

1. 加入者 또는 그 代理人이 認證書의 廢止를 申請한 경우
2. 加入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書를 발급받은 사실을 認知한 경우
3. 加入者의 死亡·失蹤宣告 또는 解散 사실을 認知한 경우
4. 加入者의 電子署名生成키가 紛失·훼손 또는 盜難·流出된 사실을 認知한 경우

②公認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를 廢止한 경우에는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 4 章 認證業務의 安全 및 信賴性 확보

第19條(認證管理體系의 운영) 公認認證機關은 자신이 발급한 認證書가 有效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認證管理體系를 安全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第20條(電子文書의 時點確認)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認證書를 이용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電子文書가 당해 公認認證機關에 제시된 時點을 電子署名하여 확인할 수 있다.

第21條(電子署名生成키의 관리) ①加入者는 자신의 電子署名生成키를 安全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紛失 또는 훼손한 때에는 公認認證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외에는 加入者의 電子署名生成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加入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의 電子署名生成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加入者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流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公認認證機關은 자신이 이용하는 電子署名生成기를 安全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電子署名生成기가 紛失· 훼손 또는 盜難· 流出된 때에는 保護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認證業務의 安全과 信賴性을 확보할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保護센터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公認認證機關에게 발급한 認證書を 廢止하고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止된 認證書는 廢止된 때부터 그 효력이 消滅된다.

⑤保護센터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安全과 信賴性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당해 公認認證機關의 申請에 의하여 새로운 認證書を 발급하여야 한다.

第22條(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의 관리) ①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認證書와 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을 安全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認證書등을 당해 認證書의 효력이 消滅된 날부터 10年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第23條(電子署名生成기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他人의 電子署名生成기를 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他人의 名義로 認證書を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個人情報의 보호)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個人情報만을 蒐集하여야 하며, 本人의 同意없이 個人정보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蒐集된 個人정보를 認證業務외의 目的으로 이용하거나 流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本人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가 자신의 個人정보에 대한 閱覽을 申請하거나 당해 個人정보의 誤謬에 대하여 訂正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④認證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職務상 알게 된 他人의 個人정보를 누설하거나 他人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電子署名認證管理業務) ①保護센터는 電子署名을 安全하고 信賴性있게 이용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고 公認認證機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의 電子署名檢證키에 대한 認證, 電子署名認證技術의 開發 및 普及 기타 電子署名認證과 관련된 業務를 수행한다.

②第3條, 第6條, 第7條, 第15條 내지 第19條, 第22條 및 第2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의 電子署名檢證키에 대한 認證에 관하

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認認證機關"은 "保護센터"로, "加入者"는 "公認認證機關"으로 본다.

第26條(賠償責任) 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 수행과 관련하여 加入者 또는 認證書を 信賴한 利用者에게 損害를 입힌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그 損害가 不可抗力이나 利用者の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경우에는 그 賠償責任이 輕減 또는 免除된다.

第 5 章 補 則

第27條(상호인정) ①政府는 電子署名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外國의 認證機關 또는 外國의 認證機關이 발급한 認證書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公認認證機關이 발급한 認證書와 동일한 法的地位 또는 法的效力을 부여하는 것을 그 協定の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政府와 電子署名의 상호인정에 관한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28條(料金 賦課) 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 또는 認證役務를 제공받는 者에게 手數料 등 필요한 料金を 賦課할 수 있다.

第29條(聽聞)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取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0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6 章 罰 則

第3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者の 申請없이 加入者の 電子署名生成키를 보관하거나 電子署名生成키의 보관을 申請한 加入者の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流出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電子署名生成키를 盜用 또는 누설한 者
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名義로 認證書を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者

第3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2項(第25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者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蒐集된 個人情報를 認證業務외의 目的으로 이용하거나 流出한 者
3.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他人의 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에게 제공한 者

第33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 또는 第32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4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條(第25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準則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認證業務準則의 변경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第25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사유없이 認證役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加入者 또는 認證役務 利用者를 부당하게 차별한 者
3.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廢止 사실을 加入者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한 者
5. 第10條第3項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사유없이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
6.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관계 公務員의 出入· 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7.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本人의 同意없이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9.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者의 個人情報 閱覽을 거부하거나 個人情報의 誤謬 訂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